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4-45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4. 17.

발의자 : 신중갑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개정취지에 맞추어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비율 수정(안 제9조제5항)

나.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3분”을 “2분”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장, 도시환경국장, <u>교통건설국장</u>, <u>디지털재정과장</u>이 된다.</p> <p>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<u>3분의 1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⑥ ~ ⑨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 <u>교통건설국장</u> 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분</u>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